



# 임금시간과 기본안내

연방노동부  
고용기준국

연방 노동부 고용기준국 임금시간과는 이민자들의 신분과 관계없이 이 나라의 노동조건과 최저임금에 관한 법을 집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.

## 공정근로기준법

공정 근로기준법은 거의 모든 사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용된다. 이법은 고용주들이 근로자에게 **주당 40시간 초과 노동**에 대해서는, 이 조건에서 면제되지 않는한, 연방 최저임금과 시간초과 수당을 지급할것을 규정한다.

이법의 보호를 받는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매 주의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. 일반적으로 임금이 지불되어야 할 노동시간이란 근로자가직접 노동을 수행한 시간, 노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 있었던 모든시간이 포함된다. 이는 일반적으로 가사노동, 여행시간, 대기시간, 훈련기간 혹은 유예기간등이 다 포함된다.

- 연방최저임금 = 2007년 7월 24일부터 시간당 \$5.85, 2008년 7월 24일부터 시간당 \$6.55, 2009년 7월 24일부터 시간당 \$7.25.
- 팁을 받는 근로자는 시간당 최저 \$2.13을 받아야 한다. 팁과 받은 임금의 합계가 적용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주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.
- 주당 시간외 수당은 일반임금의 1.5배에 해당한다.

## 가족 및 의료휴가법

이 법은 근로자 50명 이상의 기업과 모든 공공기업에 적용된다. 이 법에 따라 고용주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모든 유자격 근로자에게 **일년에 최대 12주간의 무급휴가**를 제공해야 한다.

1. 자녀출산
  2. 자녀양육 혹은 양자의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
  3. 자녀, 배우자, 혹은 부모의 심각한 건강문제를 돌보기 위하여
  4. 근로자 자신의 심각한 건강문제를 돌보기
- 또한 이 법은 해당 고용주가 이 휴가 기간에 근로자를위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. 또한 이 휴가 기간후에는 근로자가 동직중 혹은 동종 직종에 복귀할수 있어야 한다.

## 청소년 고용

이법은 청소년들의 고용에 관해서 규제한다.

**청소년들이 할수 있는 일이란:**

- 13세 이하: 아이돌보기, 신문배달, 연기활동, 연주활동
- 14세-15세: 사무실, 식료품상, 소매상, 식당, 극장, 위락시설
- 16세-17세: 위험하지 않은 모든 일
- 18세: 무제한

**14세-15세의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:**

- 오전7시 - 오후7시

(이 시간은 6월1일부터 노동절 (9월 첫 월요일)까지는 오후9시까지 연장될수 있다)

- 학교 개학중에는 하루에 3시간까지
- 학교 개학중 1주간에는 18시간까지
- 학교 휴학중에는 하루에 8시간까지
- 학교 휴학중 1주간에는 40시간까지

주의: 청소년이 농장에서 일할때는 다른법이 적용된다. 그리고 주정부 차원에서도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할수 있는 시간을 규제한다. 이를 자세히 알기 원하면 [www.youthrules.dol.gov](http://www.youthrules.dol.gov) 를 방문하면 된다 G

## 계절 및 이주 농장 근로자 보호법

이법은 농장 노동계약회사, 농장주, 그리고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농업조합들에 적용된다.

1. 임금지불의 기한이 되면 반드시 임금을 지불한다
2. 고용주가 농장 근로자들에게 주거를 제공할 경우에는 주 및 연방정부의 보건/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
3. 근로자들을 수송하는 차량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운전하며 주 및 연방 정부의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
4. 근로조건 및 기간들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밝혀야 한다

## 관련 웹사이트와 정보

연방 노동부 임금 시간과는 아래의 관련 기구들을 만들어 미국의 모든 고용주들과 근로자들이 모든 필요한 정확한 정보와 도움에 접할수 있도록 하였다.

### elaws Advisors

[www.dol.gov/elaws](http://www.dol.gov/elaws)

elaws Advisors 란 소규모 기업체나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법 안내로서 일반인들이 연방노동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웹사이트상에 준비된 기구이다. 각 elaw Advisor 는 개인이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 노동법에 관한 개인 전문가와 같다.

### 무료전화 서비스

1-866-4US-WAGE (TTY: 1-877-889-5627)

무료전화 서비스는 미국내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기준법에 관한 정보를 얻을수 있는 중요한 정보 제공처이다.

### 노동부 임금시간과의 웹사이트

[www.wagehour.dol.gov](http://www.wagehour.dol.gov)

[www.dol.gov](http://www.dol.gov)

연방 노동부 임금시간과의 웹사이트는 미국의 고용주들과 근로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와 근로규정에 관한 정보를 언제나 얻을수 있는 곳이다. 이들 웹사이트들은 노동법과 노동부의 Program 에 관한 정보를 얻을수 있는 다양한 길을 제시하며 또 필요에 따라 정보의 소재원을 정리하여 빠르고 신속하게 얻을수 있게 해준다.

### 청소년 관련 웹사이트

[www.youthrules.dol.gov](http://www.youthrules.dol.gov)

yourhRules 란 웹사이트는 청소년들이 할수있는 일의 종류, 일의 양, 안전문제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

### Email 통신 서비스

[www.dol.gov/dol/contact/index.htm](http://www.dol.gov/dol/contact/index.htm)

연방 노동부의 Email 통신체제는 모든 미국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근로나 그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을 얻을수 있는 전자통신체제이다. 여러가지의 제목 중에서 그리고 노동부 산하의 여러기관의 웹사이트에서 “Contact us”라고 된 곳을 선택하여 누르면 사용자의 질문이 해당기관으로 전달되어 신속하게 응답을 받을수 있게 해준다.